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

Safetyko
㈜ 셉티코

2021-SAFETYKO-07월호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셉티코 고객사님 안녕하십니까! 셉티코 산업안전환경 알리미입니다.
이번 달 알리미는 2021년 3월 31일 개정(시행일자 2021년 4월 1일)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항목별 준수사항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개정사항)

1. 화학물질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구 분	제출시기	제출기관	근거	벌칙
확인명세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화학물질관리협회	화관법 제9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통계조사	2년마다(9월30일)	환경청(시스템)	화관법 제10조	
배출량조사	매년 4월30일	환경청(시스템)	화관법 제11조	
실적보고	매년 6월30일까지	화학물질관리협회(시스템)	화관법 제49조	

2. 변경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구 분	대상	벌칙
변경허가 (법 제28조 제5항)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50/100이상 증가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50/100 이상 증가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추가(시범생산 제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 -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신고 (법 제28조 제5항)	- 사업장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 시(30일 이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시범생산(60일 이내)을 위해 품목 변경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 (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60일 이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3.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사항

구 분	대상		벌칙
제한물질 수입허가 (법 제20조 제1항)	- 제한물질 수입 전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허가	1. 허가 받은 제한물질의 종류, 함량 2. 허가 받은 예정물량 (50%이상 증가) 3.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50%이상 증가) 4. 허가 받은 제한물질의 용도 5.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변경신고	사업장 명칭,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유독물질 수입신고 (법 제20조 제2항)	- 연간 수입량이 100kg 이상일 경우 통관 전 신고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변경 2. 수입예정 물량 (50%이상 증가) 3. 신고한 유독물질의 용도 변경 4.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한/금지물질 수출 승인 (법 제21조 제1항)	- 제한/금지물질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 승인 신청 -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1. 승인한 물질의 종류, 함량 2. 수출예정물량 증가(50%이상), 3. 사업장 소재지·명칭, 대표자 변경(30일 이내)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4. 물질별 준수사항

구 분	준수사항	예외	벌칙
금지물질	모든 용도로의 취급 금지 (법 제18조 제1항·제2항)	시험용·연구용·검사용 목적 (제조·수입·판매 전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이행)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전에 제조·수입·사용 허가 이행(법 제1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환각물질	섭취·흡입 목적으로 판매·제공 금지 (법 제22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5. 취급에 관한 사항

구 분	준수사항	벌칙
취급기준 (법 제13조, 시행규칙 별표 1)	① 취급시설 적절 유지·관리 ②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및 방재장비와 약품 비치 ③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 혼합 보관·저장 금지 ④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다른 취급시설로 옮길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참여 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안전교육 이수자가 유해화학물질 운반 등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취급자 (법 제14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7-7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진열, 보관 (법 제15조 제1항·제2항)	판매를 위하여 아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보관 시 진열·보관계획서 제출 1.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운반 (법 제15조 제3항)	1회에 아래의 양 초과하여 운반 시 운반계획서 제출(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 시스템) 1. 유독물질: 5톤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톤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표시기준 (법 제16조 제1항·제2항)	제조·사용·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운반차량, 용기·포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기준 준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6.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구 분	준수사항	벌칙
즉시신고 (법 제43조 제2항)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즉시신고(15분) ※ 관할환경청, 소방서(119), 경찰서(112), 해당 지자체(시·군·구), 지방고용노동관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응급조치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응급조치 이행(법 제43조 제1항).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복구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등 조치명령 이행 (법 제46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7.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준수사항	벌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법 제23조 제1항)		취급시설 검사 개시 60일 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변경제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시 제출(법 제23조 3항)] ※ 변경제출 대상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 증가,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이상으로 증가하고, 영향범위가 기존의 총괄영향범위 밖으로 넓어지거나 새로운 영향범위가 생기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취급시설의 용량이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 3. 주요 취급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이 주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주요취급시설 : 별표 3의 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준의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법 제23조의 3 제1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의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 고지방법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필수 /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선택 - 매년 1회 이상 실시 -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검사	검사결과 제출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 (법 제24조 제2항)	
	정기, 수시 검사	취급시설별로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1년 또는 2년 마다) 또는 수시검사(화학사고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법 제24조제3항)	
	안전 진단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취급시설 별로 정기적(취급시설 위험도 기준 4년/8년/12년)으로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법 제24조제5항 및 6항)	미제출, 거짓제출, 적합판정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자체점검	주 1회 이상 취급시설 및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 (법 제26조 제1항) ※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자체점검대장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8. 인력에 대한 사항

구 분	준수사항		벌칙
도급	도급한 날부터 10일 이내 도급신고 이행(법 제31조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자 해임신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선임·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매2년마다 16시간 - 모든 종사자(외부 상주인원 포함) : 매년 1회 2시간 이상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매2년마다 8시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양도, 양수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법 제37조제4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동활용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 활용하고자 하려는 경우 승인 또는 변경신고 이행(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변경신고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급 방식 변경	잔여물질 처분	60일 초과 중단, 폐업의 경우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폐업의 경우 미처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고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후 휴업·폐업 예정일 10일 전에 신고(법 제34조제2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9.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사항

구 분	준수사항	벌칙
관리기준 준수 (시행규칙 별표 9)	- (일반기준) ① 취급기준(시행규칙 별표 1) 준수 ② 개인보호장구 착용 - (개별기준) ① 인계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대장 기록 및 5년간 보존(인수자 신분증 확인) ②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의 출입자와 방문차량을 확인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 및 5년간 보존 ③ 외부인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 및 물리적인 보안장치(경보장치 또는 잠금장치 등)를 설치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 ④ 청소년 판매 금지 ⑤ 도난 또는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본 자료는 2020년 7월 배포된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2021년 4월 1일 시행된 현행법에 따라 셉티코가 수정 작성한 자료입니다.